

**2019년 가맹사업법 개정안의
이해와 대응방안
(차액가맹금 등)**

1

2019년 가맹사업법 개정 개요(차액가맹금 기재 등)

(1)가맹계약서 관련

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방지관련 가맹계약서에 “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”
내용추가

(2)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

<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>

- ①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, 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
- ②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 가격 상·하한
- ③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
- ④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의 판매 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
- ⑤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

□ 지난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필수 품목 공급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,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사항을 대폭 확대했다.

○ 차액 가맹금 관련 내용,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상 이익, 판매장려금 및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.

- 이 중 차액 가맹금 수취와 관련, 가맹본부 등이 공급하는 직전 연도 주요 품목의 공급 가격 상·하한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‘주요품목’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.

2

정보공개서 관련 추가되는 기재사항

① 차액가맹금 규모에 대한 내용 기재

-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당 평균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기재.

②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및 주요품목 공급가격 기재

- 전체 공급 품목별 차액 가맹금 부가 여부를 표시하고, 주요 품목에 대한 지난해 공급 가격 상·하한 정보를 기재.

③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기재

- 정보공개서에 특수 관계인과 ① 가맹본부와의 관계, ② 관련 상품·용역, ③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.

④ 판매 장려금 관련 사항 기재

- 가맹본부나 특수 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관련 내용을 기재.

⑤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사항 기재

- ① 가맹점의 영업 지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·유사한 상품·용역의 공급 여부,
- ②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공급 여부를 기재.

⑥ 기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보완사항

① 가맹사업 업종 분류의 세분화

- 가맹희망자에게 업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현행 19종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43종으로 확대하여 기재하게 했다.

② 면적에 대한 기준 설정

-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산정 기준을 매장의 전용 면적(다른 사업자 또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제외)으로 하도록 구체화.

③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리

- 민법 개정(2011년 3월 7일)으로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제도를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도 이를 반영.

④ 시·도 분쟁조정협의회의 법 개정 내용 반영

-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에 시·도에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.

⑤ 점포환경개선시 비용청구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

-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는 점포 환경 개선 완료일부터 90일 내에 본부부담액을 지급.